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청소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1일부터 청소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추진함.
-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22조제5항제2호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차량을 무상 양여하여 청소업무 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무상양여대상 차량현황
 - 계 : 59대
 - 암롤차 : 18대(4.5톤 12대, 11톤 6대)
 - 압축차 : 22대(2.5톤 8대, 5톤 9대, 11톤 5대)
 - 재활용차 : 14대(2.5톤)
 -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 : 4대(2.5톤)
 - 스키로우더 : 1대

□ 검토의견

지 방 제 정 법

제 100조(물품의 처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지 방 제 정 법 시 행 령

제 122조(무상대부와 양여)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학교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에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의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재활용의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물품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제2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며,

○ 또한, 동 건과 관련해서 지난 제49회 임시회의시 “청소업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제52회 임시회의시에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의견청취의견”에 대하여 각각 기 동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